

[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1. 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2. 9. 19. 15:30
- 장소 :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①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범죄군 명칭, 설정범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
 - ②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검토(범죄군 명칭, 설정범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심의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2022년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개최 경과 보고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보고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49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4.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심의

가. 범죄군의 명칭에 관한 심의

- 범죄군 명칭을 ‘관세범죄 양형기준’으로 결정

나. 설정범위에 관한 심의

- 1) 거짓 서류 구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신청 관세포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수입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다. 유형분류에 관한 심의

- 1) 대유형2(무신고 수입 등)와 대유형3(무신고 수출 등)
 - 각 소유형의 법정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유형 가, 나로 분류하기로 정함

라.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심의

- ▣ 법정형, 형량분포,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및 규범적인 상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안을 정함

01¹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법·상습법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3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4	집단법·상습법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 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3¹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호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 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2)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04¹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5. 정보통신망.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심의

가. 범죄군의 명칭에 관한 심의

- 범죄군 명칭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으로 정함

나. 설정범위에 관한 심의

- 1)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 2)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 ※ 설정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3)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다. 유형분류에 관한 심의

- 1)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를 대유형2의 소유형2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대유형2의 소유형3으로 분류
-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두고 그 소유형으로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으로 분류
 - 위 유형분류 1), 2)와 같이 정함

라.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심의

- ▣ 법정형이 동일 유사한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형량분포 및 규범적 조정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안은 다음과 같음

01¹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02¹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가. 제1유형(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제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유통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03¹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6. 다음 회의(제120차 회의) 일정

- 일시: 2022. 10. 21. (금) 오후
- 안건: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